정 부

2021년도

##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(국토교통부 소관)

2022. 9.

대한민국정부

국토교통부

## □ 국토교통부(326건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1.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등 국토교통부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방 안을 검토할 것	○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(안) 국회 논의 중
기획조정실	2.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탄소중 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건물, 수송, 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「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」발표('21.12)</li> <li>- 공공임대주택·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(LH),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(도로공사), 탄소중립 R&amp;D 투자 확대(KAIA)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책·사업을 집행하며 탄소중립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3.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산된 업무 분과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	○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
기획조정실	4.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
기획조정실	5. 산하기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자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 하므로,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할 것	©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관행적인 사회사 로의 이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기획조정실	이용 부당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 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산하기관과	<ul> <li>28개 산하 공공기관에 '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'와 '부동산 취득제한 위반' 시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자체 징계규정 개정 검토 요청</li> </ul>
국토도시실	7.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사업을 점검할 것	○ 스마트그린산단 종합계획 수립 용역
국토도시실	8.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
국토도시실	9.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융합특구 취지에 부합 하는 후보지를 제출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할 것	○ '20.9월부터 5가지 도심융합특구 선정 기준*을 旣마련하여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**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0. 이순신대교의 유지·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	○ 이순신 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
국토도시실	11. 각종 국토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하여 수행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	∪ ¬±¬¬ ==±¬ ¬¬ ¬¬ + 600+,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2. 도시개발사업은 「도시 개발법」에 민간사업자 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 정이 없고,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율이 낮게 적용 되어 민간사업자로 귀속되는 개발이익 의 환수가 어려우므 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○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을 완료하고('21.12), 하위법령 개정 완료('22.6) - 민·관 공동사업 시 민간이익을 적정 수준 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제도화
국토도시실	13. 「도시개발법」에 초과 이익 상한 조항을 신 설하고, 민·관합동 개발사업에서의 시행 자 수의계약을 금지하 며, 「도시개발법」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	<ul> <li>개발계획에 분양·임대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10%이상 변경시 도시계획黍 거치도록 함</li> <li>민·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요청 및 검사 권한 부여</li> </ul>
국토도시실	14. 도시개발사업의 투명 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 태조사가 필요하며,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·감독 을 철저히 할 것	* 감사원 연간감사계획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임
국토도시실	15.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 발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	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	*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 연구('22.3~'23.1)
국토도시실	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」의 취지에 부합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	<ul> <li>○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체 예산 확대 중</li> <li>★ 1,570억원('20)→1,613억원('21)→1,613억원('22)</li> <li>- 이 중 토지매수 예산도 지속 증가</li> <li>★ 550억원('20)→594억원('21)→622억원('22)</li> <li>○ 향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보전</li> </ul>
국토도시실	예산 편성이 필요하 며. 도시재생사업 추	○ 연차별 실집행률 등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실적평가 등 성과와 연동한 23년 예산편성 추진 * 교부 전 지자체 의견조회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나, 민원, 부지미확보, 코로나로 인한 SW사업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집행 저조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19. 집행 속도가 느린 도 시재생사업에 대한 점 검을 통해 집행률 제 고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사업 선정 시,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
국토도시실	조성사업 추진 시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혁신적이 고 실용적인 대안을	○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들 위한 민·판 공동 SPC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기반 마련(5월) < 향후 추진계획 > ○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 계획 승인 등 조속 추진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「건축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제 외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 고 설치 시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받	<ul> <li>○ 개월제안구역 내 중산물 저곤서정고의 단독 설치방안 및 법령 개정안 검토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('22.9~)</li> <li>○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('23.上 예정)</li> </ul>
국토도시실	22. 도시재생 씨앗융자 관련 부동산 투기 악 용에 관하여 향후 조 치계획을 마련할 것	│ ○ 씨앗융자 사업장 정밀점검 실시('21.11월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3. 도시재생사업으로 준 공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	○ 순공시설 운영 활성화 망안 용역에
국토도시실	24.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 주택의 유형으로 인정 함으로써 주택난을 해 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(21.10.14) - 기보야 새하수바시서의 주주태의 오피
국토도시실	25.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및 입주에 대하 여 건축법상 용도분 류 체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산업통상 자원부 등과 협의할 것	<ul> <li>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건축법 상용도체계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</li> <li>산업자원부, 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6. 녹색건축물 인증 후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증건축물에 대한 부실인증 여부를 조사할것	○ 인증 취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(2.94억원) 확보 및 착수 진행('22.6~12월)
국토도시실	27.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을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공공성, 물량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
국토도시실	28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 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○ 현행 이자지원사업 활성화, 민간건축물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29. 불법건축물 건축주와 불법건축물임을 고지 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단속·처벌하는 방안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폐지로 인 한 민원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	○ 현행 법령으로 불법행위자인 건축주 (건축법 제108조)와 불법 건축물 임을 숨긴 채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 (공인중개법제25조· 제33조제1항제4호)
국토도시실	30.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 속 및 제재를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것	
국토도시실	31. 불법건축자재 단속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 링 사업의 공백이 생 기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행 주체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「건축법」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하여 불법건축자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중('21.10월 ~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2. 인구 수 외에도 지역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 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수 외에 건축 허가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% 이내 시·군·구까지 확대하는 「건축법」 일부개정 완료('22.6.10. 공포, '22.6.11.
국토도시실	33.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국고보 조금의 실집행률을 제 고할 것	○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4.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는 센터 현황을 파 악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이유로 임대료 를 올리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지역아동센터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('22.3.23.) - 지역아동센터의 용도 변경(폐지) 등에
국토도시실	35.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의 성능검증과 관 련하여 기술 안정성 · 피난성능에 대한 효율 적인 검증을 위하여 검증방법의 개선을 검 토할 것	○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체 시설의 성능검증을 전문기관(한국건설 기술연구원)의 구조·설계·방재·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검증으로 개선

「한옥 등 건축자산의	1 11 1
╢8조, 제12조, 제22 ೬, 제30조와 관련하	향후 추진계획 旣 마련('20.12월) - 한옥의 대중화·산업화를 위해 '09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옥 기술
	* 기준마련 용역 완료 후, 민간보조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와 협의 필요 -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지자체 대상 으로 기반시설 등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협의
	ll8조, 제12조, 제22 도, 제30조와 관련하 후 2015년 법 제정 이 후 추진실적이 미미하 므로, 활성화 방안을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국토도시실	37. 총괄·공공건축가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의 실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 기적인 소통으로 보조 금을 체계적으로 관리・ 감독할 것	○ 자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소통을 위한 간담회 2회('21.10월/12월) 실시
국토도시실	38. 「공공건축특별법」 등 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와 관련하여 일 선 현장에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신 중하게 검토할 것	○ 작년 두 차례 및 올해 법안소위('21.2.18, '21.6.15, '22.5.18)에서 총괄·공공건축가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 후
국토도시실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21년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선정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함('22.1월)</li> <li>- '22년 정책연구용역도 조기에 과제선정 ('22.1월) 및 발주('22.3월)하여 연내 준공 예정('22.12월)임.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0.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에 분양가상한제,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부동산 시장 안정,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50%를 출자하여 설립 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
주택토지실	41.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 우 분양가상한제를 적 용받지 않아 투기 수 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·감독 장치를 마 련할 것	변석원 설치,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안 발의('21.4, 조응천 의원)
주택토지실	42. 청약 당시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,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·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할 것	<ul><li>방안을 지속 협의 중</li>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43.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 방을 위해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·감독을 철저 히 하고 전문적인 용 역을 추진할 것	○ 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 계획 수립('21.9월) -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현장조사 및
주택토지실	44. 세종시 청약 공급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 방 안을 검토할 것	< 조치실적: 완료 >  ○ 행복도시 일반공급 청약제도 개선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('21.11)  ○ 행복도시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조정' (50%→60%) 완료('22.2)  *「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 선공급비율」개정 완료('22.2.1, 행복청)
주택토지실	45. 부적격당첨자 감소 방 안 등 청약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완료 &gt;</li> <li>부적격당첨자 발생사유·유형 분석 및 부적격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</li> <li>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입력 절차, 지역선택 안내 등 청약신청시스템 개선</li> <li>청약제한사항, 청약가점 등을 확인할수 있는 '청약자격 진단' 서비스 신설</li> <li>* (부적격당첨자 비율 추세): '19년 11.3% → '20년 9.5% → '21년 8.9% → '22. 7월 7.7%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46.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 형 정리 등 제도개선 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등 개선방안 검토 중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형 정비 등 검토</li> </ul>
주택토지실	47. 세종시 이전기관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 도 운영 과정에서 실 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	○ 「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 공급 점검」 관련 감사원 실질감사 ('22.2~'22.3) 등 ○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 요청('22.7) 및 주택법
주택토지실	48. 국내 대기업 직원들에 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경제자유구 역 특별공급 제도 폐 지를 검토할 것	○ 기판주선 특별공급 개선을 위한 설태 파악 등 개선방안 검토 중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49.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공급한 아파트에 대 해 무순위청약 과정에 서의 주택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, 필 요 시 수사기관에 수 사를 의뢰할 것	○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했으나,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 * 분양자료 요구 근거 미약, 강제조사 권한 없음
주택토지실	50. 나쁜 임대인, 전세보 증금 미반환 사고 블 랙리스트 등의 정보 공개를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법안'이 상임위 소위 계류 중</li> <li>★ ①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(소병훈 의원, '21.5.6) :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인 정보를 공개 ② 「주택도시기금법」 개정안(김상훈 의원, '21.9.24) :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,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개정 및 운영방안 등 마련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51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리스크 관 리라는 제도의 본래 취 지에 충실하도록 국 토교통부가 지도·감 독할 것	○ HUG 고분양가사업장 심사규정 개정 ('21.9)* 및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지침
주택토지실	주택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주택분양보증시장 개 방에 대한 신중한 검	<ul> <li>○ 주택시장 상황 및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검토 결과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
주택토지실	53. 부동산 통계 생산 체계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주택시장 분석· 예측시스템 개발에 대 해 검토할 것	○ R&D를 통해 주택시장 분석 기능 시스템 개발 완료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54.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립·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율(시 세 대비 전세가) 축소 등 리스크 관리 방안 을 검토할 것	○ 연립·다세대 주택의 주택가격 과다산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기준 요건 개선(HUG 보증규정 개정, '21.10)
주택 <b>토</b> 지실	55. 디딤돌 대출 및 버 팀목 전세자금대출 실 적 제고를 위하여 제 도개선을 검토할 것	○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<sup>*</sup> 및 카카오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56. 임차인 대항력 강화, 신고제 확대시행 등 임차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것	○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('21.12),
주택토지실	57. 1인 가구 증가 등 주 거환경 변화를 반영하 여 최저주거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분석 및
주택토지실	58. 반지하층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할 것	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59. 국토교통부가 예산 편 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사 업을 장기적으로 확대 하도록 노력할 것	○ 주거급여 시급 등 주거취약계층에 내한
주택토지실	60. 국토교통부가 주택매 입절차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전·현직자 주택 매입 원천 제외, 외부
주택토지실	61.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 화방안을 마련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 사회적 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('22.5~, 건축공간연구원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('22.下)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62. 기존주택 전세임대주 택의 경우, 전세시세 대비 정부 지원한도가 낮아 주택 물색이 어 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것	○ 보증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'22년 지원한도를 일부 인상(일반유형 수도권, 1.1억→1.2억)하였 으며, 추가적인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
주택 토지실	63. 여수시 웅천동 부영 2 차·3차 분양전환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 한 감정평가의 적정여 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	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('21.12.7, 한국부동산원)
주택토지실	64.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재부와 기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	○ '22년 본 예산에 공공자가주택 공급관련 예산반영 완료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5. 일부 신혼희망타운에 거주의무가 미적용되 어 투기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개선할 것	○ 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생활환경이 유사한 인근지역* 주택과의 매매가격을 비교
주택 <b>토</b> 지실	66.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 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 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	도입 등 관련 연구 과제·선정 및 용역 진행 중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67.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 주택의 경우에도 미임 대율이 8.2% 정도 되 므로, 소형평수 위주 의 임대주택 공급 계 획을 재검토할 것	최초 인허가 완료(*21.12)하였음
주택토지실	공실률을 높이고 있 으므로,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	최초 인허가 완료(*21.12)하였음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69. 주거지원 제도를 설계 함에 있어서 수요 계 층별 새로운 목표 산 정 시, 고령자 수요의 확대를 감안할 것	○ 그간 주거족시도느법 등에 따라 <b>구장애</b>
주택토지실	70. 부채비율이 100%를 초과하는 민간임대주 택의 경우 100%까지만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할 것	○ 부채비율 100% 초과자'에 대한 임대 보증금 특별보증 상품(주택도시보증공사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 -	석유화학공단 공해차 단녹지로 도심의 허파 기능이 유지될 수 있 도록 주택개발이 아닌 공원 조성이 필요하 고, 울산 강동공원은 해안가 지역의 보존상	○ 출산야름 공급속신시구 :     장기미집행 공원실효에 대비해 공원 보전과 주택개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민·환경단체·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중     울산강동 공급촉진지구 :     울산시가 인근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(조망권 침해 등)
주택 <b>토</b> 지실	72.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 업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	사업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법안 발의 (소병훈 의원, '21.5)되어 개정 진행 중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3.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임대 등록 시스템(렌트홈) 고도화를 위해 행정안 전부·국세청 등과 연 계방안을 검토할 것	○ 등록임대주택 소유권 정보 확인 등을 위해 대법원 등기시스템 연계 완료('21.12)
주택토지실	74. 장기일반 민간임대주 택의 최초임대료가 주 변 시세에 비해 과다 한 경우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	이 장기일만민간임대구택 공급 시 최소 임대료를 한국부동산원·KB 시세 등을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5.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 최소화, 토지비 축은행 설립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지구에서는 공공임대 35%이상, 공공분양 25% 이하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실제 평균적으로 공공주택을 51% 수준으로 공급중임.</li> <li>사업지가 공공주택 공공 공공 민간주택비율 77곳 59% 39% 20% 41%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적정비율을 검토하여추진</li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토지은행은 「공공토지비축법」에 따라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</li> <li>○ 토지은행의 당초 수립 목적 달성과 신규토지비축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유형다양화, 규모 확대 등 공공토지비축활성화 방안 마련 중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「공공토지비축법」 개정안 발의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76.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 련, 페이퍼컴퍼니 여 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조사하고,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	개성안 말의 완료(21.11)  ○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(LH 택지공급계약서 개정) 완료('22.4)  ○ 택지공급 시 IP당 1회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LH 청약시스템 개선 완료('22.1)  ○ 택지를 공급받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벌떼입찰 여부 조사 진행 중('22.2∼)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벌떼입찰 조사 완료
주택 토지실	77.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 시 불법 또는 편법적 인 요소가 없는지 검 증을 강화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'20년 3월부터 '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을 포함한 의심거래를 다수 적발(3,787건) 하였음('22.3)</li> <li>-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78.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, 개발이익 환 수 미비 등 제도적 불비점 보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으로 국민 불신 해소 필요	<ul><li>부동산 시장 안정,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50%를 출자하여 설립 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</li></ul>
		< 조치실적 : 조치 중 >
		○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을 완료하고 ('21.12),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('22.6예정)
		- 민·관 공동사업 시 민간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제도화
		- 조성토지 직접사용 범위를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도록 절차 강화
		- 개발계획에 분양·임대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10% 이상 변경시 도시계획委 거치도록 함
		- 민·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요청 및 검사 권한 부여
		< 향후 추진계획 >
		○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중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79. 설계공모, 공사입찰, 물품·지급자재 구매, 임대주택 매입 등의 결정을 위한 심사 시 내부직원을 배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 신안에 대해 업체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재검 토할 것	<ul> <li>나 역신 I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</li> <li>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·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·논의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│ 경영평가 시 만영되는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'22년 LH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 시「장애인고용법」상 의무비율('22년 3.6%)의 2배 이상 장애인 구분 모집('22.4월, 7.2%)</li> <li>★ (채용결과) 총 263명 중 장애인 12명(4.56%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차별없이</li> </ul>
		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 추진 [한국부동산원]
	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 ○ 한국부동산원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채용 확대
		- (한국부동산원) '22년 신입직원(정규직) 채용시 장애인 구분 모집 추진('22.9월) * (채용목표) 총 33.5명 중 장애인 3명(8%)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기관 자체 연도별 장애인 정규직 고용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 관리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1. 내부정보를 이용한 한 국토지주택공사 임직 원의 부동산 투기 사 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제도 및 규정을 잘 관리해 나갈 것	○ LH 혁신 T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'22.6.3)
주택토지실	82. 한국토지주택공사 혁 신을 조직개편 방안으 로 접근하기보다는 국 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둔 장기적 혁 신안을 마련할 것	그미시리 뒷보이 이하니!! 청시 되소
		<ul> <li>향후 추진계획&gt;</li> <li>전문용역 추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('22년말)</li> <li>부동산 시장 상황, LH 인사·노무·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·진단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83. 인력 감축, 업무 이관, 전직원 재산등록, 취 업제한 확대 등 징벌 적 성격의 조직개편으 로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혁신안 을 재검토할 것	○ LH 역신 IF 확대 개편 및 이행관리 체계 수립(*22.6.3) -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지속 추진
주택 <b>토</b> 지실	84.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, 전자계약 이용 의무화 및 프롭테크 업계의 시스템 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할 것	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기능개발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85.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부동산 허위·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제재 등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·시행('20.8.21.)</li> <li>- 법 시행 이후 분기별 모니터링과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6,245건의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음</li> <li>* (분기별 모니터링) 5,507건, (기획조사) 738건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음</li> </ul>
주택토지실	86.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중개업 및 프롭테크 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</li> <li>★ 킥오프 회의 실시(*22.1.11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탄력적 회의 운영으로 업계간 상생방안 마련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임차인 중도퇴실 시 주체별 적정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가이드	○ 임사인 중도 되실 시 중개모구 무담에  
주택토지실	88. 실제 불법행위자인 건 축주와 불법 건축물임 을 숨긴 채 중개행위 를 하는 중개업자를 단속 및 처벌할 것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 ○ 국토부·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- 즐개대사무 하이 서명이므 일바 드
주택토지실	89.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진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무공산 중개입계 - 프폽테크입계 산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90. 부동산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상한액을 높이 는 등 제도 개선을 통 해 임차인을 위한 현 실적 보호장치를 마련 할 것	○ 실질적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업공인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
주택토지실	91. 사모리츠의 감축 필요 성을 검토하고, 공모 리츠·앵커리츠가 활성 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을 마련할 것	○ 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
주택토지실	국부동산원의 리츠 관	<ul> <li>근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</li>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93. 일반 국민이 리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지표, 리츠지수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고,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	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 -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 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 향상 추진
주택 <b>토</b> 지실	94. 리츠 인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완료 &gt;</li> <li>공모·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 발표('22.1.12, 국토부·금융위·공정위)</li> <li>공모리츠 인가절차 간소화</li> <li>한국부동산원 리츠 관련 조직 확대 개편</li> <li>리츠심사단(10명) → 리츠심사부(14명), 금융전문가 채용 추진, 인가 신청 제출 자료 표준화 등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<b>토</b> 지실	95.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 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무농산거대문식원 설치 등의 내용들 담은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개정안 발의 ('21.4, 조응천 의원), 국회 계류 중 < 향후 추진계획 > ○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
주택 토지실	96.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 자 인증을 받은 사업 자가 건전한 부동산시 장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 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	일당 사무관리를 위한 성기적 모니터당 를 실시하고, 모니터링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사업자 대상 수시점검 실시 * 인증 홈페이지 불편신고 접수내용, 인증사업자
주택토지실	97.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공정성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업 무에 참여하는 감정 평가사를 제척할 것	○ 중부위 위원인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 토지실	98. 성남 판교대장지구 보 상과 관련한 세 개 감 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평가의 적정 성을 검토할 것	○ 감정평가서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, 평가 방법 및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
주택 토지실	99.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회부기준(안) 관련 관계기관 협의('22.3월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타당성조사 회부기준 마련(5월중)</li> </ul>
주택토지실	100. 감정평가사시험 응 시수수료 개편안을 2022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것	○ 감성평가자 I·2자 시엄 등시ㅜㅜ됴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1. 편법증여 및 불법투 기를 근절하기 위하 여 부동산 감독기구 를 조속히 설치할 것	다음 다음 다음 그 대응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그리고 다음
		< 향후 추진계획 >     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
주택토지실	를 사용하여 산출한 사회적 이익률을 기 초로 부동산 개발사 업자에게 적정 이익 을 보장하고,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환	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제도화(「도시개발법」개정, '21.12)
주택토지실	103.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및 통계관리를 할 것	제고할 수 있도록, 사업성 개선를 위한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4.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     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, 감면사업 정비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 ('21.11)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관련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조치
주택토지실	105.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방 안을 강구할 것	○ '22년 공동주택가격(안) 열람 시 관계 부처(기재부, 행안부, 복지부 등) 합동
주택토지실	106.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 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외국인 주택보유 데이터 구축 및 통계생산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'추진중</li> <li>★「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」(222~12월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외국인 주택보유 데이터 구축 및 통계생산 추진('23.1분기)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주택토지실	107.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이 보다 정 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안전진단 능력을 제 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	○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진단전문 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매뉴얼 설명 및 부실사례 전파 등 교육 실시(3회') * 안전진단전문기관: '21.10.29, '22.4.15
주택 토지실	108. 하자심사 및 분쟁조 정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고,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국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운 영을 철저히 할 것	○ 법적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'22년에 조사 인력을 증원[3명, (당초)37명→40명]하고, 신청사건 처리 과정을 전산화(전자우편, 모바일 사용 등) 하는 하자관리정보
주택 토지실	109. 감정평가 3인 추천 제도 및 보상감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	○ 보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0. 줄어들지 않는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 적 예방대책을 마련 할 것	○ 부실시공 근절방안(3.28) 등 대책 발표를 통해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 중
건설정책국	111.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중장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패러 다임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○ 부실시공 근절방안(3.28) 등 대책 발표를 통해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 중
건설정책국	112.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사고원인 파 악 및 재발방지 대책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사고조사위 운영은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* * (前 사조위원장) 원인이 명확한 경우 사고 조 사 필요성은 높지 않으며, 무분별한 사조위 운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3. 건설사고 발생 후 사고신고 및 사후조사결과 제출이 미흡하므로,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근로복지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간 MOU 체결(6.9)을 통해 신고 정보를
건설정책국	114. 건설 안전장비의 규 격이 여성 건설노동 자에게는 맞지 아니 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을 개선할 것	○ 여성 건설노동자 안전장비 사이즈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의견 전달
건설정책국	115. 동일한 안전법령 위 반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별 행정처분 결 과가 상이하거나 결 과 미회신 또는 미처 분 종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	○ 지자체 건설안전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현장관리 철저 공문 시행(1.4, 2.7) - 또한, 매 반기별 행정처분등 제도 이행 현황을 조사·관리할 계획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16.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 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서 관련 제도를 개선 할 것	○ 안전관리계획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등 관리 철저 중이며,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('22.11~'23.2)
		< 향후 추진계획 >
		○ 우기대비 등 현장점검 지속 추진
		○ 안전관리계획서 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 추진(~'23년)
건설정책국	117. 광주붕괴사고 같은	< 조치실적 : 완료 >
	사고가 재발되지 않 도록 시설물 유지관	○ 유지보수공사 고도화 추진
	고독 시설을 표시된 리업을 별도로 발전 시키는 등 시설물 유 지관리 및 안전을 강 화할 것	-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 전문화를 위해 「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」을 개정('21.11) 하여 신축공사와 구분되는 유지보수 공사 별도 신설
		- '22.1.1.부터 유지보수 실적관리 기관을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, 세부 공종별로 세분화 하여 유지보수 공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 중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관으로서 역할을 확 대할 수 있도록 「국 토안전관리원법」상 의 관리원의 사업범 위를 조정하는 등 개	<ul> <li>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및 시설물</li> <li>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폭넓게</li> <li>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등</li> <li>방안 검토 중</li> </ul>
건설정책국	수 및 싱벌석 손해배 상 등 처벌을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것 <	<ul> <li>★조치실적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,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를 위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 추진('21.8~)</li> <li>★ 장경태·허영·김회재 의원 개정안 발의('21.9)</li> <li>-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('22.5) 후 계류 중</li> <li>★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추진</li> <li>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 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추진</li> </ul>
건설정책국	120. 하도급업체에 공사 < 대금을 지급하지 않 ( 는 등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결방 안을 마련할 것	< 조치실적 : 완료 >    하도급대금 미지급, 불법하도급 등 건설   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기능 강화를 위해   신고센터 법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  완료('22.2 건산법 시행령 개정, '22.8 시행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1. 최근 5년간 건설사업 자에 대한 영업정지 가 3,000여건, 등록말 소가 2만여건에 이르 고 있는데, 건설산업 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해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	○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건설업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신규 및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'을 강화 토록 독려(11.25)하고, 공문 시달(12.21) * (시기)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(8시간이상)
건설정책국	122. 모터카의 제작년도 등을 속여 건설업 등 록을 하는 등 철도· 궤도공사업의 부정등 록 근절 방안을 마련 할 것	실도·제도공사업의 필요장미(모터카) 부정등록 근절을 위해「철도안전법」등 관계법령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도록
건설정책국	123.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	○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, 실무협의체 상시운영,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4.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및 장비 사업자 등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을 확산하는 등 근본적인 체불 근 절 방안을 마련할 것	○ 공사대금의 중간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·지급의무를 법제화('22.1월)하고, 세부시행방안 고시 제정('22.7) ○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재·장비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
건설정책국	125. 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제도 시행 후 실제 지급내역이 2건에 불 과한데, 임금체불 등 을 근절하기 위해 지 방국토청과 산하기관 에 직접지급시스템을 전면도입할 것	○ 발주자 직접지급제 안내를 입찰공고서· 계약조건에 명시토록 하고, 계약 시 직접지급 합의를 적극 권장토록 조치 완료('21.1)
건설정책국	126.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구분 청구·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노무비 지 급률을 제고할 것	○ 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구분청구·지급 의무화('22.1) 이후 구분청구·지급 실태 점검 실시('22.上), 반기별 지속 점검 예정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27. 건설기계 대여업 종 사자의 생존을 위협 하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근절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면 「건설 기계관리법」에 따라 설치한 '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'에서 체불금 회수를
건설정책국		○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결과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('21.12.) * 지자체 등에 하자보수결과 등록 지도·감독 및 필요조치 협조 요청('21.10.25.)
건설정책국	129.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권내에 있는 대 형 건설사들의 하자 판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 리대책을 마련할 것	○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결과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질이나 하자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 는 등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(발주, '22.6)중으로 용역 과업에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추진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등 건설현장 품질 및 하자관리 철저</li> </ul>
건설정책국	그들겠기사다스 괴하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5개 지방국토청에 국도건설공사 준공이후 하자관리 철저 지시하고 관리</li> <li>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0조에 따라시설물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정,기간 내 검사 실시 및 하자 발견시 건설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</li> <li>* 도로건설과-3454호(2021.11.9.)</li> </ul>
건설정책국	132. 건설산업 생산체계 어떤 기편 후 수주에 어려 움을 겪는 영세 전문 건설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주 불균형 해소, 공정경쟁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·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영세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역개편 보완방안 마련('22.5)</li> <li>-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.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 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등</li> <li>* 국토부-업계(건협·전협·기협)간 합의(5.30)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3. 건설산업 업역개편 후 종합·전문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 율을 조정하고, 제대 로된 직접시공 여부 점검 및 직접시공계 획서 DB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	○ 상호시장 진출비율 조정을 위한 업역 개편 보완방안 마련('22.5) -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.5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종합건설
건설정책국	134.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검사를 금지하고, 등록말소와 함께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여 부적합한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○「건설기계관리법, 개정'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·운행을 제한하고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* '22.2.3 개정, '22.8.4 시행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5. 규격에 맞지 않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,모든 소형 타워크레인이 규격을 갖추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○ '19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후 9차례 논의 끝에 소형 T/C 조종사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「건설기계 관리법」 개정·시행('21.7)
건설정책국	136. 시정조치(리콜) 명령 이 내려진 타워크레 인은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	○「건설기계관리법」개정 <sup>*</sup> 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(리콜) 명령이 내려진
건설정책국	137. 타워크레인 불법 구 조변경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대행기 관들로 하여금 불법 구조변경을 막도록 조치할 것	(1,181대)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* (조사기간) '21 11 ~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38. 불법 구조변경이 의 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민·관·정 조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전수조 사를 할 것	○ 18년 이후 구소면경안 타워크레인     (1,181대)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  * (조사기간) '21, 11 ~
건설정책국	139. 대한건설기계안전관 리원 내 신고센터가 신고 접수 후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	○ 정기검사 미수검·안전기준 부적합 건설 기계에 대한 사용·운행중지 명령 도입 (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, '22.8.4 시행)
건설정책국	140. 대한건설기계안전관 리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, 준정부기 관으로서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 책을 마련할 것	○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혁신방안 마련 ('21.12)및 추진실적 지속 관리·감독 중 * 검사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, 경영 혁신 및 공익성 강화 등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1. 적정한 검사 원가를 반영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	○ 다워크데인 검사 구구표 연결와들 취만 연구 용역 중(~'22.6)
건설정책국	142.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품질 검사를요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이 선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설태소사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중 (규제심사
건설정책국	143.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특정 공법 심의 시 신기술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 련할 것	○ 신기술에 가점(3점)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」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4. 건설신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용 협약자도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마련할 것	○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상 정부 입찰공사는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참여 가능 (기재부 유권해석, '20.2.21.) < 향후 추진계획 > ○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이
건설정책국	145. 각 부처별 신기술 인 증 분야를 재정립하 기 위하여 신기술 분 야를 명확하게 분리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다 무서 소판 전기물의 녹색 및 취시에 따라 지정 및 활용되고 있으므로, 개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 추진
건설정책국	146. 충분한 검증을 거친 건설신기술을 특정공 법 심의대상에 우선 적으로 상정하고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 는 등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	○ 신기술에 가점(3점) 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(60%→80%) 등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「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」 마련(9.8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7. 매년 건설신기술 지 정 공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, 건설 신기술 개발자에게 특허와 다른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신기술에 가점(3점) 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(60%→80%), 공고부문 우수 신기술 적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「건설 신기술 활성화방안」 마련(9.8)
건설정책국	148. 건설신기술 지정 심 사 시 배점기준과 관 련하여 초기 설계 · 시공 비용의 절감(15 점)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(5점)의 기준이 낮아 유지관 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배점기준을 변경할 것	○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1.10.14.) - '설계·시공비 절감'과 '유지관리비 절감'을 동일점수(5점)'로 변경하고, '공사기간 단축(5점)'을 신설하는 등 심사기준 배점 변경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49. 건설신기술의 기술범 위 조정신청의 범위 를 확대하고 신청절 차를 간소화하여 건 설신기술 제도를 활 성화할 것	○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'19.12)에 해당내용 旣 반영 및 적용 중
건설정책국	150. 감리업체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받고도 다수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, 소송 제도를 통해 벌점제 도를 무력화 하고 있 어 벌점제도를 개선 할 것	○ 기존 제도는 벌점을 부과 받아도 평균 으로 산정하는 방식(벌점의 합/점검한 건설 공사 수)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와, 일부 모호한 벌점 기준 등으로 인한 소송 문제가 있었으나,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1. '無사망사고 벌점 경 김'제도가 건설사업 자에게만 적용되고,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에게는 미적용되고, 설계와 CM(Construction Management)이 별도 업무임에도 벌점을 일괄적용하여 사업자 들에게 불이익이 가 중되고 있으므로 현 행 벌점제도를 개선 할 것	<ul> <li>無 사망자고 일점 경검제도 건설엔지니어당 업체에 적용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(~'22.12월 예정)</li> <li>○ 다만, 건진법에 따른 Eng업역에 대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벌점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, 업계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동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한 것으로,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벌점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업계 책임을 약화시키는 경과로 귀경된 수 있어 주자기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2. 공공기관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90%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러한실태를 개선하고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것	<ul> <li>군환골재 의무자용제도의 실요성 확모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'를 추진 중(환경부 협조)에 있으며,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제출'된 상태</li> <li>* 순환골재 품질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품질개선 없이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경우</li> </ul>
건설정책국	153.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외건설 근로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 방안 마련('21.12, 대외경제장관회의) -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주지원, 투자개발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4. 해외건설수주는 일자 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해외건 설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	○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('21.12, 대외경제장관회의) -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도 지속 지원 중 * 건설기업-의료기관(13개) 매칭, 화상상담 등
건설정책국	155. 건설공제조합이 운영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 이는데, 건설 관련 공 제조합에 대한 관리· 감독을 강화할 것	○ 건산법령 개정으로 공제조합 관리 감독 강화 취지에 맞게 건설공제조합 정관을 개정하여 감독강화 조치('21.12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6. 건설공제조합의 예산 이 무분별하게 대한 건설협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	○ 당초 운영위에서 예산만 심의·의결 하였으나, 시행령 개정으로 결산도 포함
		○ 운영위에서 예산·결산 심의를 면밀히 살피고, 예비비 지출도 운영위원회 승인 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
건설정책국	157.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PQ)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데, 사업자에 대한 중복 적이고 과도한 규제 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	가선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(8.16)되어 국회에서 논의 예정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58.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는 시공자의 부주 의 또는 소속 건설 기술인 개인의 일탈 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 등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양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	있는 他 법률파도 함께 고려될 필요 - 식품위생법, 건축법, 의료법, 중대재해법 등 총 361개 법률 에서 거의 동일한 문구로 양벌규정 적용중
건설정책국	159. 건설기술 진흥법상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일부 위 반사항에 대해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어, 동 시행령 의 과징금 금지조항 을 개선할 것	다 건설엔지디어당 영합정치의 파성금을 대체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(8.16)되어 국회에서 논의 예정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60.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 정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직접경비를 정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	개성 판던 엽외 의건 구덤 중(9월)   
건설정책국	161.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 해「건설기술 진흥법, 과「산업안전보건법, 을 하나의 법으로 통 합하여 운영하는 방 안을 마련할 것	<ul> <li>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건설업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, 건설업에 특화된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와 병행하여 운영 필요</li> </ul>
건설정책국	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제척 기간(위반행위 종료	○ 건설산합기관합 위한자절 홍보 및 조지 현황 전수조사 실시 * (조사기간) '21.11 ~ < 향후 추진계획 > ○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도래로 행정 처분 불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 마련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의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건설정책국	163. 집회·시위 등 등 건설현장에서의 분쟁이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갈등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전무하므로, 동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대책을 마련할 것	○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·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갈등 해소센터('19.7, 건설협회 등에 설치)를 대신하여 일원화된 신고 기관인 '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'를 '21년11월
교통물류실	164.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재원 조달방식의 적 절성에 대해 검토하 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	<ul><li>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</li><li>재원 조달방식 적절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</li>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65. 2017년 1월 교통안전 공단이 계약한 화물 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1단계 사 업 계약 해지의 적절 성과 이에 대한 정산 등 사업자 보호방안 을 검토할 것	○ 교통안전공단의 "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사업 용역 정산 계획 ('20.12)"에 따라 정산 완료 - 적정 정산내역 산출을 위해 원가용역,
교통물류실	166.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미영입용 와눌자에 대한 구조 언료 보조금 대상 확대 가능여부 등 방안
교통물류실	167.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일정 톤수 이상 수소화물차를 구매하 여 배송업무 등의 판 매·배송 부가서비스 를 운영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 원방안을 검토할 것	○ 미영업용 화물사공사 운영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등 방안 검토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68. 수수료 불법공제, 부 대조항 위반 등 안전 운임제 미준수 사례 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실효성 확 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	○ '22. 4월에 국토부·지자체 합동으로 1회 점검(인천)을 실시하였고, '22년 1월 부터 5월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신고중 371건을 관할
교통물류실	169. 화주 측 대표가 안 전운임위원회에 참 여하도록 해결방안 을 마련할 것	○ '21.11월부터 화주측 대표로 무역협회.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0. 현행 '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'을 구체화 하고, 국토교통부, 경 찰청, 지자체 등 분 산된 단속체계를 일 원화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	<ul> <li>▼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구체화 완료 (화물차법 시행규칙 개정, '22.1.28.)</li> <li>- 화물차의 적재화물 결속 등 이탈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및 이행 조치</li> <li>○ 적재 불량 단속원 부족에 따라 '과적 단속원'및 '자동차안전단속원'을 지도·단속원으로 권한부여 등 인력확충 (화물차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'22.1.28.)</li> <li>○ 다만, 단속체계 일원화는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선행 필요 등 관계기관 간의견 상충으로 사실상 추진 곤란</li> <li>- 이에,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의 지도·단속으로 대체할 계획(6월~10월)</li> <li>○ 1차 합동 지도·단속 실시(6~7월)</li> <li>- 국토관리청·경찰청·지자체·교통안전공단·도로공사 참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(6회)</li> <li>- 점검은 고속도로IC·휴게소·졸음쉼터와일반국도 과적검문소에서 실시</li> <li>※ 9~10월 중 2차 합동 지도·점검 예정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관계기관 합동 지도·단속 실시</li> <li>- 1차(6월~7월), 2차(9월~10월)</li> <li>* 국토관리청, 경찰청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민자도로사업자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1. 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에 주선수 수료 상한제 도입 을 검토하여 과다 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할 것	<ul><li>순수사업법 개정안의 발의되어 있으나,</li><li>신중히 검토할 필요</li></ul>
교통물류실	172. 화물정보망 알선구조 문제로 야기되는 운 임체불, 과적, 불법적 행위 및 시장교란행 위에 대한 제재방안 을 검토할 것	○ 업계가 삼여하는 화물문구업계 업의제 들 구성하여 화물정보망을 통한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방안 논의중('22.4~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3. 화물차 교통사고 다 발지역에 대해 교통 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를 마련할 것	○ 도토의 설시 및 시설물 관리는 '도토립」에 따른 각 도로관리청(국토부, 시·도, 시·군 ·구)이 주관하나,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4.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,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ESG 경영평가 반영,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 IT기업 참여 독려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	○ 스마트눌류센터 지원 확대를 위하여 '21년 대비 '22년 예산을 19억 증액하여 총 126.9억 편성 - 아울러,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에너지 사용 관리, 온실가스배출 관리, 폐기물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    시정・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(건의사항 포함)
교통물류실	175. 소화물배송대행서비 < 조치실적 : 추진 중 >
	< <b>향후 추진계획 &gt;</b> ○ 종사자 보호 의무 부과 등 업종 관리
	강화를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등록제 도입 용역 추진 검토('22.하~)
교통물류실	176. 테슬라 모델3 자동 < 조치실적 : 완료 >
교통물류실	177. 자동차 하자 수리 사 < 조치실적 : 완료 > 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이력을 미 고지하는 경우, 2년 이내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 가능,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(100만원→1,000만원)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11) ★ 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('22.4.25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78. 현대자동차 코나 전 기차 화재 결함 조사 에 대한 결과보고서 를 신속히 작성할 것	○ 고신합 배터디 교세 디눌 시행(21.3.29~) 이후 리콜 시정율은 90.7%(22.754대/26,699대.)
교통물류실	179.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결함조사 전문성 향 상을 위해 결함 조사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	○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·전자장치에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기간 연장 혜택을 제 공하는 등 피해를 보 상하는 방안을 검토	<ul> <li>조치실적: 추진 중 &gt;</li> <li>2022년 예산을 확보하여「과징금 부과리콜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연구 용역」발주('22.4)</li> <li>* (과업내용) 리콜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및소비자를 위한 보상 방안 마련 등</li> </ul>
	<	: 향후 추진계획 >
	C	<ul><li>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('22.5)</li><li>용역 수행('22.5~'22.10)</li><li>용역 결과보고('22.10)</li></ul>
교통물류실	181. LTE-V2X 통신방식에 <	조치실적 : 추진 중 >
	대한 실증을 조속히 완료할 것	) 과기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('21.8)하여 LTE-V2X 실증 추진중
	<	: 향후 추진계획 >
	C	) 시험계획 수립(~'22.5), 도로시험(~'22.9)을 거쳐 실증결과 도출(~'22.10)
교통물류실	182. 자율주행 보안사고 <	조치실적 : 추진 중 >
	예방을 위한 기초인 프라를 조속히 구축 할 것	<ul><li>자율주행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</li><li>관리체계 구축 추진중</li></ul>
		: 향후 추진계획 >
		)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('22~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3. 자동차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승용차에 의 무화하는 방안을 검 토할 것	○ 응용사동사에 내안 사동사 미상사동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절차 진행  * 입법예고('22.2.22~4.23) → 규제심사 진행 중
교통물류실	184. 이륜차 소음문제 개 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할 것	
교통물류실	185. 이륜차 불법 튜닝에 대한 점검, 소음 피 해 처벌 강화, 소음 관련 규정 개정을 추 진할 것	○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개조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('21.10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6.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○ 법인사 사직사용 방지글 뒤에 법인사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
교통물류실	187.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할 것	○ 중고차 인터넷 표시·광고에 대한
교통물류실	188. 불법운행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보조대 파손방지 대책을 마 현하고, 불법운행차 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	□ 사용자 변호판 모조대 파곤망시를 위한   탈거 방법 지자체 배포('22.5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89. 자동차정비업의 '일 자리전환' 관련 대 책을 마련할 것	○ 자동차 패러다임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정비 장비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 마련('21.8) * 혁신성장 BIC3 대책 발표 시 반영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자동차정비업계에 전기차 정비 장비 지원 및 전환 교육 등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
교통물류실	190. 자동차 정기검사 징 비에 사용되는 범용 판정프로그램을 개빌 하고, 교통안전공단 에 검사결과를 전송 하는 방법을 마련힐 것	○ 한국교통안전공단'에서 범용 판정프로 그램을 개발·보급('22.1) * 각 검사 장비에 제작사의 프로그램이 탑재
교통물류실	191. 자동차제작사는 직영 사업소 서비스 확대 가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힐 것	○ 직영사업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·교육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2. 자동차 민간검사소 (지정정비사업자) 부 실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	

구분		<b>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193.	인천-서울간 M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	0	조치실적 : 추진 중 >  M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지자체 수요 조사('22.3~4월)를 실시하였으며, 제출된 수요 중 여객법령 등 미충족 노선 등에 대하여 보완 추진('22.5)
			< 3	향후 추진계획 >
				인천시에서 신설 건의한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 등 추진 중('22.5~)이며,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 신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
교통물류실	194.	과도한 감차로 인해 열악한 택시 이용환 경을 감안하여 총량 제 지침의 탄력적 적 용 방안을 검토할 것	0	<b>조치실적 : 완료 &gt;</b>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완료 ('22.1.27.)
교통물류실	195.	디지털 플랫폼의 독'	< 3	조치실적 : 완료 >
		과점 문제와 관련하 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		독과점 관련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, 공정위에서 일부 업체의 콜 몰아주기 관련 독과점 실태조사 등을 진행
교통물류실	196.	가맹택시 수수료 부 과체계의 법제화를 통한 가맹점 피해 방 지방안을 마련할 것	0	조치실적 : 추진 중 > 플랫폼가맹사업 수수료 부과체계 관련 하여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공정위 소관) 개정안이 논의 중
				향후 추진계획 >
			0	법안 심사 대응(정무위원회 소관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폼 관련 특정업체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공정경쟁 시장 조성 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, 지	○ 독과점 문세 해결 및 공성경쟁 시상 조성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<sup>*</sup> , 논의 중 * 진성준 의원안('22.2 발의) 등 4건 < 향후 추진계획 >
교통물류실	198. 여객자동차운송플랫 폼사업 내 업종 간 겸업 금지 및 운송 플랫폼의 중개 및 배차 정보의 취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간의 겸업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있어 운송플랫폼사업 내 겸업 금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4자 협의체 구성 및 플랫폼사업자-택시 업계 간 소통체계 구	○ 국도교통위원의 이언등 의원을 구원으로 구축 예정이며, 개최 시기 등은 논의 중
교통물류실	200. 여객자동차법 외의 법률에 근거한 정 부지원금 부정수급 불공정담합, 국세·지 방세 체납 등에 따른 타 부처 행정차 분도 전세버스 운 수사업자 경영·서비 스 평가 항목에 빈 영할 수 있도록 저 도개선 방안을 미 련할 것	○ 2022년도 전세퍼스 운구사업사 경영· ' 서비스 평가 시 반영 예정('22.12) -
교통물류실	201. 전세버스 지입기사들 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하여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, 공공 기관 통근 노선을 위 선 제공받는 등의 지 원을 제공하는 방언을 마련할 것	○ 전세버스 기사 생활안성지원금 시급, 협동조합 운영,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 지속 발굴·추진 중 * '21년도, '22년도 4차례에 걸쳐 총 2,100억원 지원(3.5만명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2. 전세버스 시장 정상회 및 지입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을 통해 과잉 공급 해소 등 시장 정상화 노력</li> <li>- 전세버스 운행정보신고 · 운행기록증 기재항목을 확대하여 운행정보 투명화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'22.6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용역('12.7~'12.12)을 통한 수급조절 정책 검토</li> <li>* 현재 4차 수급조절정책 시행중('20.12~'22.11)</li> </ul>
교통물류실	203. 한국교통안전공단 교 통조사평가처 현장조 사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힐 것	○ 교동안선법 개성 후 현상 소사인력 및  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4. 자율주행차의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속 히 구축할 것	○ 사팔꾸앵 모안사고 메망을 위안 인증
교통물류실	205. 각 지자체가 지역 실 정에 맞게 택시 차령 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할 것	○ 사영제도의 개신는 택시군당시미스 품설, 환경 및 승객 안전에 미치는 영향,
교통물류실	206.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방안을 강구할 것	○ 벽지노선 지원사업 관리강화 및 지원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07. 도로망 구축사업 진행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 이동성 강화위해 스마트 기술과연계된 활용도 높은세심한 초기계획을 마련할 것	○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('21.9),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('21.11) 마련 시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의 이동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음
교통물류실	208. 저상버스, 시각장애 인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, 특별교통 수단의 적극적인 도 입을 위한 예산편성 등 노력을 강구할 것	○ 교통약자법 개정(*22.1월)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며, '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50% 증액
교통물류실	상버스 관리 및 유 지 실태 점검을 위 한 실효성 있는 지 침 마련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	비스 경사판 작동여부 등 저상버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관리현황을 조사 중에 있음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0. 특별교통수단 보급· 운행에 중앙정부 예 산 지원을 확대할 것	○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'22년
교통물류실	211.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제고 및 지역간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추진 중 &gt;</li> <li>● 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'22년 예산을 전년대비 50% 증액(48억→94억)</li> <li>* '21년 보급률 83.4% → '21년 보급률 86.0%</li> <li>○ 지역간 이용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(교통약자법 개정, '22.1월)하였으며,</li> <li>- 진행중인 연구용역'을 통해 운영비 지원 방안·규모을 산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'23년 예산(안)에 반영할 예정</li> <li>* 교통약자 제도개선연구, '224~12, 한국교통안전공단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'23년 예산에 반영하고,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 ('23.7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2. 개발제한구역 내 고 령자들을 위한 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	<ul> <li>○ 현재도 개월제한구역 등 교통도되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벽지노선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등을 검토하겠음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</li> </ul>
교통물류실	213.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	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
교통물류실	214.「교통약자법」제18조 에 따른 보행우선구 역 지정 관련 사업을 행안부로 완전이관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'22년부터 행안부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5. 대체부품 인증제도 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대체부품 구매를 위한 시스 템 구축 등 개선대 책 마련할 것	○ 대체부품 인증제도 홍보 카드뉴스 및 웹툰 제작·배포('21.9월),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(건의사항 포함)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성등 기준이 너무 낮 게 정해져 있어 오히 려 더 좋은 성능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방 안을 마련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한 소비 자를 국토부가 고소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반사 성능이 높은 필름을 개발한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·성능검사, 단속카메라 인식 여부 검사 시행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필름제작 업체에서 반사 성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의 기기 받사 성능 기주가도 함시에</li> </ul>
		[입장 표명]
		< 조치실적 : 완료 >
		○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관련으로 수사 의뢰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하였음('21.12.17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교통물류실	218. 카카오모빌리티와 택 시업계 간의 갈등해 결을 위한 상생협의 체를 구성할 것	○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실 수관으로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의원실과 논의하여 추후 협의체 구축 및 킥오프회의 등 실시 예정
항공정책실	219.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길이 설계 시 기후변 화 반영 설계를 검토 하고,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에 노력할 것	○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및 활주로 표고, 온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 -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('22.4.29) 후 후속
항공정책실	220. 관계부처와의 협조 를 통해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령제한을 검토할 것	○ 헬기 기령 제한 타당성 검토 전문가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조속한 기 업결합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 고, 대한항공의 독과 점 폐해를 방지할 운	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, - 항공사 통합계획 PMI('21.6)에 인위적 구조조정, 과도한 운임인상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
항공정책실	222. 항공사 통합 관련 경 쟁제한성 해소를 위 하여 운수권·슬롯 확 충, LCC에 재배분 등을 검토할 것	<ul><li>코로나19 팬네믹으로 모듀되었던 항공</li><li>회담 적극 추진 및 슬롯 확충을 위해</li></ul>
항공정책실	223. 국토교통부 내에 항 공사 통합 관련 공정 거래위원회·항공사·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	○ 공정위·해외 경쟁당국 심사 등에 대응 하기 위해 국토부 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('21.1월~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24. 국책금융 지원을 받 는 항공사업자의 자 구노력을 검증·관리 할 것	○ 양공사업법 세2/소세8오에 따라 새누
항공정책실		
항공정책실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객실승무원,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중 (계속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, 근무시간 기준 등 개정 추진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  ○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객실승무원,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중 (계속)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, 근무시간 기준 등 개정 추진
항공정책실	228. 김포공항과 주변지역 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서울 서 남권 경제도약의 거 점으로 조성할 것	O 도시세성득월 1천의 섬의을 중파(21.12) 하였으며, 현재 공공기관 타당성 재조사
항공정책실	229. ICAO 장애물제한표 면 개정안 발효 이후 국내 적용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것	TO TCAO는 상태물제안표면 국제기문들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	1100 1011 01111 001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인천공항 서쪽 공역의 트롬본 비행절차 도입을 위한 국방부와 공역조정 협의
항공정책실	231. 항공기 지연 관련 원 인을 세부적으로 구 분하여 통계 관리할 것	○ 86기 시킨 현진'군ㅠ 세계는 녹세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2. 숙련 항공정비사 수 급 부족문제 대비를 위해 숙련정비사를 육성할 것	U 고도대 19 8 8 그도 20년 구나 영비사
항공정책실	233. 울진비행훈련원 항공 사 조종사 취업연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	○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조종
항공정책실	234. 드론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드론실명제 대상을 확대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드론실명제는 산·학·연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'시행 중 ('21.1~)</li> <li>* ('20.12월까지) 사업용 전부+비사업용 12kg↑ →('21.1월이후) 사업용 전부+비사업용 2kg↑</li> <li>- 2kg 이하 비사업용(레저용) 드론으로 실명제 대상 추가확대는 현재 시행중인 드론실명제의 정착 상황 등을 보아 검토할 예정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('23~'32) 수립 시 드론실명제 확대 필요성, 추진 시기 등 검토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5.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드론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할 것	
항공정책실	236. 드론사고 발생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시 스템을 구축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'21년부터 드론실명제·조종자격 차등화 등을 시행 중이며,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신설 및 과태료를 상향하고, 드론 사용 사업체를 전문기관(교통안전공단)이 관리토록「항공안전법」개정('21.12)</li> <li>○ 드론 사고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'도 적극 추진 중('22.2~12)</li> <li>★ (수행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드론 사고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23.3~)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적정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마련하 고 비사업용(개인용) 드론에 대해서도 보 현 가입을 의무화하	이 기존 사업용에만 석용되던 드론 모험 의무가입 대상을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까지 확대토록 하고, 의무보장 범위도 대인배상에서 대인·대물배상으로 확대 토록「항공사업법」개정('20.6)
항공정책실	238. 의무보험 제도의 실 효성 강화를 위해 드 론보험 가입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것	○ 드폰 모험이덕 및 사고성모판리 시스템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39. 드론사고 건수 등에 관한 통계 구축 등 의 정책을 추진힐 것	○ 드폰 사고 연왕·이덕 등에 판안 정모들
항공정책실	240. 충청권·강원권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교육 응시수요를 싱 시 수용할 수 있는 드론 인프라를 구축 할 것	○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응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설 실기시험장 16곳을 지정('22.1), 충청권·강원권 내
항공정책실	241. 협약의 일방적 종료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'先선발' 훈련 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항공 사에 이들의 고용보 장을 권고할 것	<ul> <li>팬데믹으로 항공업계 채용시장이 동결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, 조종인력양성협의체 회의('22.3.31)를 통해 先선발훈련생 지속 관리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2. 기간산업안정기금 지 원대상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 기준 조정 을 위해 금융위원회, 산업은행과 적극적으 로 협력할 것	○ 우리누는 송사입금 기운 완화를 위해 금융위의 기금 운용지침 개정시 요건 ' 완화(5,000억원→3,000억원)를 건의하였으나,
항공정책실	243.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 호라는 기금 조성 취 지를 고려하여 기간 산업안정기금의 대출 지원 금리를 재검토 할 것	기안기금의 지중금리모나 높은 이사율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, 공적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4.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공항버스 지 원 등 경쟁력 강회 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	○ 항공사,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'22.12월말까지 연장('22.6)
항공정책실	245. 대구경북 신공항 접 근교통망을 개항시기 에 맞게 조기 구축할 것	○ 내구경국 신공양 개양 시기에 맞추어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46. 국내 항공사 사외이 사들이 감시 등 본 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도 록 노력할 것	○ 성무가 민간기업의 사외에서 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,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재무구조 모니터링 등 항공사 관리· 감독
항공정책실	247. 울릉신공항 공사 중 지이유 및 준공 예 정일 준수 여부, 시 공사 관련 법규 준 수 여부 등을 검토 할 것	○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, 현재 공사 정상 추진 중
항공정책실	248. 항공운송사업자의 사 업구조 다변화를 모 색하고, 과잉 면허발 급에 대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	○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'및 증편 규모 제한없이 항공수요에 따른 항공편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	< 조치실적 : 추진 중 > ○「울산공항 비행장시설 위험평가 및 관리대안 연구용역('21.6~12)」을 실시 하여 착륙대 기준 개정에 따른 위험 재평가 및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추진
		< 향후 추진계획 >  ○ 주변지역 개발, 노선추가 신설 등과 연계하여 수요 급증시 여객터미널 등 시설이 적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
항공정책실	250.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	
항공정책실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'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'로 선정('19.1)되어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음</li> <li>-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완료('22.6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적기 완공 및 공기 단축을 위한 발주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예정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2.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국토교통부의 참여를 검토할 것	○ 항공업계 대변을 위해서는 해외입국과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3. 위드코로나 대비 검역 프로세스 구축에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	< 조치실적 : 완료 >    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'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' 전면 운영('22.3.21~)  * 국적사, 외항사, 여행사 등 대상 Q코드 활용안내 독려 간담회 개최('22.6.10) 등
		○ (지원인력 배치 지원) 검역은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나, 질병청에서 Q코드 활용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부에서 항 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, 검역 과부하에 따른 지원인력 필요 요청에 양 공항공사 등을 통해 지원 중
		※ 국제선 정상화와 함께 늘어나는 국제선 여객 대응위하여 양 공항공사 등에서 검역 지원인력 우선 투입'진행
		* 대기열 관리, Q코드(신속검역 가능) 안내 등 수행하는 지원인력 74명
		- 또한 추가 인력소요 대응을 문체부 소관 사업'을 활용, 총 140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문체부·지자체와 협의 완료(8.8) 하였으며,
		* '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('22.4~12, 예산 396억원, 시·도 주체)
		- 각 공항 검역소별 검역지원인력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인력 투입·배치 중
		* 인천 55명, 김포 10명, 제주 16명, 양양 1명 채용 完(9.22 기준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4. 공항에 항공특별사 법경찰 도입을 검토 할 것	
항공정책실	255. 한국공항공사의 만 성적인 국내선 항공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	
항공정책실	결을 위하여 국토교	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ㆍ기재부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7. 2021년 7월 5일 김포 공항에 착륙시도한 제주항공 211편 사건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	○ 활주로 오접근·오착륙 시 조치사항과 관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「항공교통
항공정책실	258. 공항 사용료를 현실 화하고, 공항공사의 민영항공사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합리 적인 수준으로 조정 할 것	자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항 사용료에 관한 감면 및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59.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지연 개선 시 스템을 조속히 구축 할 것	○ 現 시언기순들 국제동용기순으로 먼정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60. LCC 산업구조 재편 을 검토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LCC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선조기 정상화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실시</li> <li>- 국제선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항공규제 해제 및 증편규모 제한없이항공수요에 따른 항공편 공급 추진조치 발표('22.6.8)</li> <li>* 시간당항공기도착편수제한(20대→40대)과비행금지시간(Curfew, 20시~익일 5시) 해제</li> <li>-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5,061억원('20~'22.7월 누계),기안기금 4,821억원('20~'21) 등 지원</li> <li>- 고용유지지원금 연장(90일) 완료('22.6월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LCC 회복추세를 보아가며 산업구조개편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</li> </ul>
항공정책실	261. LCC 항공사의 정비사 확보 등 사고 예방 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	○ 항공기 신규등록 시와 연·월간 항공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항공정책실	262. 상임감사 전문성 및 적정성, 임원추천위 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낙하산 문제에 대 한 감사를 검토할 것	○ 공공기관 임원은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공사 정관 등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 적격성을
항공정책실	263. 인천공항 재무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대책 을 마련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완료 &gt;</li> <li>○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익증대 방안 검토 및 현물출자 추진 등</li> <li>-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수요 감소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등으로 악화된 공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물출자 완료('22.8) ('21년 403억원, '22년 425억원 출자완료)</li> <li>* (절차) 출자신청(공사) → 의견서 제출(국토부) → 계획서 작성(기재부) →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</li> </ul>
항공정책실	264. 대형 국적항공사 통 합 관련, 항공업 경 쟁력 강화방안을 검 토할 것	○ 공정위와 경쟁제한노선 축소 및 슬롯·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65. '제2차 고속도로 건 설계획'을 적기 수립 할 것	< 조치실적 : 완료 > ○ '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' 수립·고시('22.2)
도로국	266. 고속도로 개방형 IC 진출입로에 대한 교 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고속도로 폐쇄식 IC 진출입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구축('21.10)
도로국	267. 한국도로공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 민 편의시설이나 물 류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	ㅇ ( <b>편의시설</b> )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, 공원, 사회적 약자 시설 등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68. 사실상도로에 대한 관 리방안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관계기관 회의('21.11)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, 해당 지자체가 도로 유형'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조치('21.12)</li> <li>* 건축법상 도로(75~80%), 도시계획도로(10~15%), 사도법상 사도(3% 내외)</li> </ul>
도로국	269.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등에 대해 도로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연행 도도등급 조성의 구기, 설차 등들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*시행 중
도로국	270. 일반국도의 야간 교 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명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지 침 개정을 검토할 것	O 조명시설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야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, 설치 효과 분석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71. 일반국도 신규사업 착	< 조치실적 : 완료 >
	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	<ul><li>사업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규 일반 국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시행</li></ul>
		* '22년 국도사업 현안점검회의 개최(1.19)
		< 향후 추진계획 >
		○ 일반국도 신규사업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 이행(계속)
도로국	272. 호남고속도로 지선 중	
	서대전JCT~회덕JCT 구간의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	○ 제2자 포폭포도간절계획에 만형 판됴
		< 향후 추진계획 >
		○ 계획반영 사업의 경제성,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절차 착수
도로국	273. 도로포장 관리체계 개	< 조치실적 : 완료 >
	선방안을 검토할 것	○ 업체선정 평가방식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실시('21.11)
		○ 신규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국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'22년도 포장사업 발주('224)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274. 민자고속도로 정부지 원 방식에 대해 검토 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완료 &gt;</li> <li>○ 정부지원이 필요한 MRG(최소운영수입보장) 대상 8개 노선 중 7개 노선 MRG 해소</li> <li>* 인천대교는 협약에 따라 '24년 이후 종료 예정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통행료 수준, 물가·금리 등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축소 노력 지속</li> </ul>
도로국	275. 국도 위 낙하물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완료 &gt;</li> <li>○ 모바일 앱(도로불편신고체계)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가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개선(~'21.12)</li> <li>○ 도로안전지킴이 서비스'를 통해 낙하물처리 및 통계작성 등 체계적 관리 중('21.1~)</li> <li>*보수 및 작업 정보를 수집, 신속하게 공유 및 관리하는 현장작업 업무 서비스</li> <li>○ 적재불량 단속 및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홍보 등을 실시(계속)</li> </ul>
도로국	276. 국도 건설공사 준공 이후 적기에 하자보수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방국토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· 감독을 철저할 것	○ 5개 지방국토청에 국도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관리 철저 지시하고 관리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0조에 따라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도로국	공익서비스(PSO) 비 용을 보전하지 않아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부채를 감축할 수 있	○ 동행료 감면금액 모선을 위한 PSO 예산을 지속 요구 중(2011~)이나, 재정 여건 부족으로 미반영
철도국	278. 철도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발 SRT 전 라선 운행 방안을 검 토할 것	< 조치실적 : 완료 >  ○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방안*을 검토하고, 관계기관(SR, 코레일) 협의 진행 중  * 중정비 중인 SRT 1편성 정비를 완료하여수서~익산~여수EXPO 구간 운행
철도국	279.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의 역할 제 고방안을 검토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('21.10~) 추진 중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위원회 상정</li> </ul>
철도국	대한 철도차량의 임 대요율을 사법기관	< 향후 추진계획 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1. 한국철도공사 부채감 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	
철도국	282. 낙후된 호남의 지역 발전 및 국토 균형발 전을 위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검토할 것	○ 예타면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,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토
철도국	283. 제4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에 신규사업으 로 반영된 대구~광 주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	○ 예타면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,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토 - 다만, 예타면제 논의에 앞서 사업타당성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4.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 도모 및 주택수요 분산, 탄소중립(저감), 그린 뉴딜 실천, 경기 동 남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-A의 광주, 이천, 여주, 원주 연 결을 위한 GTX-A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	○ GTX-A 삼성∼동탄구간 내 수서역 접속부를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 및 터널확폭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*되어 본선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, * 기본·실시설계 및 사업실시계획 변경(약12개월), 확폭터널 공사(약 12개월) - 수서∼광주 사업도 연결선 반영 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타당성재조사로 인한 사업지연(1∼2년), 사업추진 불투명
철도국	율적이고 안전한 운 행을 위해 평택 지제 역에 차량 기지 건설	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6. 국토교통부 철도통합 안전망(LTE-R)과 행 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망 간 전파간섭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 안을 마련·시행할 것	○ 철도통합무선망(LTE-R)과 재난안전망 (PS-LTE) 간 기지국 최적화'를 통해 원강선, 전라선, 군장산단인입철도 총
철도국	287. 경부선 송탄역의 북 쪽 출입구 추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	<ul> <li>조치실적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출입구 추가설치 관련 관계기관(국토 교통부, 평택시, 철도공사) 협의('22.3월)</li> <li>-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 추진 *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검토 시행(평택시, ~'22.8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송탄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방안 협의('22.9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288. 경부선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이용편의 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	○ 기존 퓩뽀개당(EV 2대 실시) 계획 구입 
철도국	289. 청량리역 정비창 이 전부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 토할 것	│ │○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여

구분 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 290.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검토할 것	○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'철도시설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'에 따라 선로점검차 등 4종 24대의 최첨단 현대화 유지보수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 시정	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법적 분쟁 최소화 방 관리 안을 마련하여 시행 설립 할 것 이 민자 관리 연구 (한국 < <b>향후</b> 이 '민지 (『철도	실적 : 추진 중 > 철도 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'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' 추진(「철도사업법」개정 중) 철도 유지관리 기준, 운영평가 방안, 지원센터 역할 마련 등을 위해 용역 완료('21.6~'22.6)
철도국	철저한 사고조사 및 ('21.5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대책 하여 보고할 것 - 사고	실적 : 완료 > 학회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 5~'22.6월)로 결과 및 재발방지 에 대해 이헌승 위원장, 정동만· 호의원실 보고 완료('22.4월) 관련 시공사 및 감리단 등 부실 부과 요청('22.5.31, 부산국토청)
철도국	운영적자 및 지자체 하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 한 근본적인 개선방 안을 마련하여 보고 ○ 용역	실적 : 추진 중 > 철도 무임수송 개선방안을 검토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('22.3~) 추진계획 >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방안 마련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철도국	기록장치 설치를 제 외하는 「철도안전법 시행령」을 모법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 하고 한국철도공사	논의하고 있으며,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 - 한국철도공사에는 영상기록장치 훼손이
철도국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태화강∼송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·고시('22.9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'25년 개통 목표로 설계 착수('22.下) 예정이며 철도공사를 통해 차량제작 추진</li> </ul>
철도국	296. 코로나19로 인한 철 도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국가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	

<b>구분 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 297.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의 불공정·불평등 채 용비리를 근절할 방 안을 마련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</li> <li>- 4차례 전수조사 완료 및 제5차 조사 진행 중</li> <li>* 4차 조사까지 행정조치(212건) 및 신분조치(349건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(~ '22.10.)</li> <li>- 산하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조치 등 실시 예정</li> <li>*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('22.2.~10.), 43개 기관 대상</li> </ul>

구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·전파('21.2.23.)</li> <li>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'22년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및 산하공공기관에 전파</li> <li>*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엄수,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사회 신뢰제고</li> <li>○ 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실시</li> <li>- 설명절('22.1.24.~2.4.), 선거철('22.3.2.~3.8, 5.23.~5.31.),을지연습기간('22.8.16~8.26.),추석명절('22.9.1.~9.8.)소속·산하기관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</li> <li>* 복무관리 실태,정권교체기 복지부동 등소극적 업무행태,정치적 중립위반 등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지속 실시</li> <li>-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선거기간,휴가철,추석,연말연시 등취약시기 집중점검</li> <li>*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는 엄중조치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운영지원과	299.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보고할 것	○ 우수한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공모형 직위 <sup>*</sup> → 개방형 직위로 전환
감사관실	집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급을 받았고,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, 이를 개선하기 위한	○ 천억위의 성념 건설당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부 청렴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규명을 위해 맞춤형 진단추진(22.1.~) ○ 2022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('22.5.) *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사전차단, 청렴도 제고와 갑질문화 개선에 공감대 형성, 청렴교육 및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감사관실	301. 국무조정실이 적발하 여 국토교통부에 이 첩한 비위 사실 중 성희롱 건에 대한 조 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징계 등 적 정한 조치를 할 것	○ 성희롱 피해입증을 위해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, 피해자측의 면담 거부와 증거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사 중단
운영지원과	302. 균형인사 실현을 위 해 국토부 여성관리 자 임용실적을 제고 할 것	○ 22.6. 기준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는
공공주택 추진단	303.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주민들 과 충분한 협의를 거 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	○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등을 위해 민·관·공 협의체 구성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304. 투기방지를 위한 전 매제한 특례 폐지의 취지는 좋으나, 전매 가 가능하다는 기대 하에 협의 양도한 경 우와 같은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할 것	○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 시 전매행위 제한 규정 등 전매 관련 유의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안내 중 (인천가정2, '22.6.7.)
공공주택 추진단	305. 울산태화강변지구조 성으로 태화강 수변 공원 인근에 난개발 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것	○ 울산대화강면 시구 북속에 완중을 위언 공원 조성계획 반영('20.12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	지구지정 등 사전절차 추진 중 <b>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</b>
공공주택 추진단	307. 장현·목감 공공주택 지구 인근 장현물왕 교차로의 입체화 및 관내 연결로 등에 대 한 적극적 광역교통 대책 수립 등 광역교 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	등에 대한 적극적 광역교통대책수립 - (협의사항) 광명시흥지구 등 주변개발 사업을 고려한 교통수요 재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('21.12) - (분석결과)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개발을 검토할 것 -	조치실적 : 추진 중 >     보완 제출된 민간개발안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 및 검토('22.6)  - 개정('22.6.20)된 기준으로 민간개발안 재검토 요청(서울시, '22.7)  향후 추진계획 >
	0	) 사업계획(안) 접수 시,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공성·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하고 사업방식 결정
공공주택 추진단	로수택사업 융사규모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○	조치실적: 추진 중 >  기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집행현황·수요를 감안하여 대폭 증액('22.8 정부안 반영)  * '22년 2,675억원 → '23년 4,496억원  민간재원 활용 시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신설('22.8 정부안 반영)  향후 추진계획 >  용자구조 개선 예정('22.12)
공공주택 추진단	계를 관리할 것	조치실적: 추진 중 >          비집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준, 방법 등을 규정한 「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」마련('22.2.17. 제정)          향후 추진계획 >          개별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수집 · 관리 중인 빈집 정보에 대하여 통일된 정보 수집 · 관리 방안 마련('23.下)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공공주택 추진단		* 서울강서('21.11.23), 진성준 의원실('22.1.6), 의왕내손('22.3.18)
		<b>향후 추진계획 &gt;</b> ○ 국회 법안 검토 시 지원을 지속하고 후보지에 법안 계류 상황 설명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내용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여 발표</li> <li>★ 120대 국정과제(7.26): (약속22-116번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균형발전 총괄기관, 지자체, 관계부처 등과 추진방향 협의</li> </ul>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	<ul> <li><b>조치실적</b>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혁신도시 건설·조성 시에 진입도로 (6,590억원) 및 상수도시설(490억원) 설치 비용 국고 보조</li> <li>* 건설 준공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주체</li> <li><b>향후 추진계획 &gt;</b></li> <li>○ 우리부는「'22년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용역(4~12월)」을 통해 지원 강화</li> </ul>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4. 울산혁신도시 주변 홍 수 피해에 대하여 시 업시행자인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대책을 마련할 것	○ 나군2시구 소아선정미공합계획 시사제   협의('21.10)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5.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가 공공기관 지 방이전의 본래 취지 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활용되도록 할 것	○ 이전 비대상 공공기관이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종전부지 매입 처리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6. 공공기관 투자·출지 회사를 지방으로 이 전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	○ 중중기판 시방이신 판년 대공을 푹싱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8.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 공기관의 이전 계획 을 구체화할 것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</li> <li>- 균형위 심의('21.10.13), 이전계획 승인 ('21.10.28), 기상청 1차이전('21.12~'22.2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대전 이전 3개 기관 이전계획 수립</li> <li>- 지자체 의견과 부처 검토・조정,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승인 추진</li> <li>* 특허전략개발원('22.9월), 임업진흥원('22.12월), 기상산업기술원('22.12월)</li> </ul>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19. 혁신도시 이전공공기 관의 수도권 통근버 스 운행을 축소할 것	○ 정주여건 활성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
혁신도시 발전추진단	320.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 파트가 투기에 악용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│ │○ 2011년에 도입된 혁신도시 특공제도 │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1. 서울지하철 5호선 김 포·건단 연장 관련, 지자체 간 이견 조정 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○ 세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관련기관(대광위,

구분	시정・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	<ul> <li>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중</li> <li>★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('21.5~'22.9)</li> <li>ኛ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교통	<ul> <li>&lt; 조치실적 : 추진 중 &gt;</li> <li>○ 트램 등 교통시설에 대한 편익·비용 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중</li> <li>★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 완료('22.9)</li> <li>&lt; 향후 추진계획 &gt;</li> <li>○ 예타지침(기재부) 개정을 위해 적극협의 추진('22.하반기, 기재부)</li> </ul>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4. 공항철도와 서울9호 선 간 직결사업 관련 서울시·인천시 간 비 용분담 이견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	운영비 年88억) 분담방안에 대한 서울시· 인천시 간 이견'해소를 위해 대광위

구분	<b>시정・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5. 광역교통개선대책 분 담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U 광역교통개선내적 집행질적 등을 다 반기마다 실시
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	326.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구축이 필요한 지자 체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BRT 사업 개선방안 을 마련·시행할 것	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